

2006년도 적용 건설공사 기계설비부문 표준품셈 개정내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해 12월 30일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46개 항목의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관계기관 실무자로 구성된 '품셈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공표했다.

건기연은 신기술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사용되는 공법을 중심으로 기계설비부문에서는 발열선등 5개의 품셈이 신설되었고, 기존 품셈의 조문정리 등 체계보완이나 적정성 조정을 위해 재료 할증률등 4개 항목을 보완했다.

기계설비부문의 발열선 품은 배관 동파방지를 위해 가구내 급수 급탕 계량기 주위, 가스보일러 하부배관 및 옥외지하주차장 배관 등에 발열선을 설치하고 있으나 적정품이 없어 전기표준품셈의 Heat Tracing System을 준용하고 있어 가구내와 공용부위로 구분해 신설한 품이다.

건기연은 품셈개정을 위해 지난해 3월 각 발주기관과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대상항목을 선정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까지 건설현장에 대한 실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품셈을 신설·보완했다고 밝혔다.

[편집자 주]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제 1 편 공통사항 1. 적용기준	보완	1-8. 주요자재 1~4. (내용생략) [참 고] 국가를당사자로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2. 8. 24) 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①각 중앙 관서의 장은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자재의 품질·수급상황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공급하는 자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8. 주요자재 1~4. (현행과 동일) [참 고]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삭 제”</div>
	보완	1-18. 품질관리비 1. (내용생략) 2. 품질관리비는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참 고] (내용생략)	1-18. 품질관리비 1. (현행과 동일) 2. 품질관리비는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참 고] (현행과 동일)

항목	구분	현행	개정											
<p>제 I 편 공통사항 1. 적용기준</p>	<p>보완</p>	<p>1-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노동부가 고시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동 사용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은 고시내용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내용을 참고하여 별도 계상한다.</p> <p>1-34. 안전관리비 1.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이 비용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안전관리계획의 작성비용 나. 정기안전점검비용(동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1항제2호 관련) 다. 발파, 굴착 등으로 인한 주변건축물 등의 피해 방지대책 비용 라.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p>	<p>1-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건설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공사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노동부가 고시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의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p> <p>1-33. 안전관리비 1. (현행과 동일)</p> <p>가.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나. 동법 시행령 제46조의4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비용 다.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비용 라. (현행과 동일)</p>											
<p>제 II 편 기계설비 공사 1. 공통공사 보완</p>	<p>신설</p>	<p>2. (내용생략)</p>	<p>2. (현행과 동일)</p> <p>1-3. 단열공사(보온, 보냉, 방로) 1-3-7. 발열선 (m당)</p> <table border="1" data-bbox="903 1301 1437 1425"> <thead> <tr> <th>구분</th> <th>계장공</th> <th>보통인부</th> <th>단위</th> </tr> </thead> <tbody> <tr> <td>세대내</td> <td>0.03</td> <td>-</td> <td rowspan="2">인</td> </tr> <tr> <td>공용부위</td> <td>0.03</td> <td>0.007</td> </tr> </tbody> </table> <p>[주] ① 본 품은 배관 동파방지를 위해 세대내 급수 급탕 계량기 주위, 가스보일러 하부배관 및 공용부위 PD내 입상배관, 지하주차장 배관 등에 필요한 발열선(계량기함내 덮개식 제외)의 설치기준이다. ② 세대내 발열선은 작업준비·소운반, 발열선설치, 작동시험 및 작업정리가 포함되어 있다. ③ 공용부위는 작업준비·소운반, 발열선설치(램프키트 조립 연결 및 설치, 발열선 설치 및 고정, 분기부 Tee Splice 설치 및 관말 End Seal 설치, 보온마감후 발열선 경고판 설치), 분전함설치(파워커넥션킷트 설치, 분전함 배선인입부 가공, 분전함 위치선정 및 고정, 분전함과 파워커넥션킷트 연결부 강제전선관배관 설치, 분전함 내 배선 및 결선), 작동시험 및 정리가 포함되어 있다.</p>	구분	계장공	보통인부	단위	세대내	0.03	-	인	공용부위	0.03	0.007
구분	계장공	보통인부	단위											
세대내	0.03	-	인											
공용부위	0.03	0.007												